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4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5.

다. 회 부 일 : 2024. 8.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1월에 자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였으나, 이러한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III. 검토의견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공공기관 지정 제외 기관 -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 <신 설>	○ 공공기관 지정 제외 기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현행법 제4조제1항¹⁾은 정부가 직접 출연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²⁾에서는 해당 구성원 상호간 부조,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이거나 지자체가 설립과 그 운영에 관리하는 기관,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2023년 1월 30일 개최된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³⁾하였고, 2024년 1월 31일 개최된 공운위에서는 혁신·도전을 위한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총 22개 기관)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였음⁴⁾.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既) 지정해제된 4개 과학기술원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과 같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3)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은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였다.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법인도 운영상 자율성·독립성을 위해 지정유보중)”

출처: 기획재정부(2023),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3. 1. 30.

4)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현황[참고1]

는 것임.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⁵⁾되며, 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관리, 경영혁신 등 현행법에 따르는 공공기관의 의무⁷⁾가 있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⁸⁾에 따른 조직, 인사, 복리후생, 경영혁신, 보수 등의 규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존재함.

그러나 현재 4개 과학기술원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나 규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관의 목적과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한 경영(연구)목표, 성과관리체계 등을 수립하고, 우수 인재채용 및

-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제13조(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등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는 인사운영, 복리후생, 예산운영, 조직 및 경영진단, 계약원칙, 경영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공공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고 대부분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은 정부의 입장변경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재지정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원 등 교육·연구목적 기관이 안정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역량과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공공기관의 지정은 환경, 제도, 기관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지정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정부가 기관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정하여⁹⁾ 예외적으로 지정제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은 독립성·중립성, 지방분권 보장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현행법상의 법적 지정제외 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은 빠른 과학기술 변화에

9)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법적 지정제외는 상호부조기관(설립목적이 구성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 및 권익향상), 지자체 설립·운영기관(지방분권 보장), 언론기관(독립성·중립성 보장)에 한정

대응하여 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자 예외적으로 지정해제한 것인만큼, 지정유보상태로 고급인력 유입 등 지정해제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을 법적 지정제외로 하는 것은 기관여건 등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영 의원안(의안번호 2113912)이 제출되었으나, 2022년에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개편¹⁰⁾하면서 4개 과학기술원을 2023년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여¹¹⁾ 사실상 법 개정의 효과가 달성되었고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음.

10) (정원) 50→300명 이상, (수입액) 30→200억원 이상, (자산) 10→30억원 이상

출처: 기획재정부(2022),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2022. 8.

11)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은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였다.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법인도 운영상 자율성·독립성을 위해 지정유보중)”

출처: 기획재정부(2023),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3. 1. 30.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기관) ① (생략)	제4조(공공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같은 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신설>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48